

# 第1章 總 則

## 第1條 名 稱

本 클럽은 서서울컨트리클럽(以下 “클럽”이라한다.)이라 하며 그 英文 名稱은 SEOSEOUL COUNTRY CLUB으로 한다.

## 第2條 目 的

本 클럽은 서서울觀光 株式會社가 소유經營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關聯된 附帶施設을 利用 하여 골프를 통한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스포츠를 통한 健康增進에 寄與하고 國民體育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.

## 第3條 事務所

本 클럽의 事務所는 京畿道 坡州市 廣灘面 혜음로324(龍尾理 山79-1)에두고 必要한 場所에 連絡 事務所를 둘 수 있다.

# 第2章 會 員

## 第4條 會 員

本 클럽의 會員은 다음과 같다.

1. 名譽會員
2. 特別會員
3. 正會員(個人 및 法人會員)
4. 外國人會員 및 海外會員
5. 年會員
6. 家族會員
7. 其他會員

## 第5條 名譽會員

名譽會員은 國家發展에 功勞가 있는 人士中에서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社가 推帶한 者로 한다.

## 第6條 特別會員

1. 特別會員은 本 클럽과 골프계에 功勞가 있는 者로서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社가 그 資格을 賦與한 者로 한다.

2. 特別會員은 會社가 定한 期限 內에서만 會員의 禮遇를 받는다.

## 第7條 正會員

1. 正會員은 個人會員 또는 法人會員으로서 所定の 節次에 따라 會社의 承認을 받은 者로 한다.
2. 法人會員은 2口座를 原則으로 하며 口座數에 따른 利用者를 記名式으로 한다.

## 第8條 外國人會員 및 海外會員

外國人會員 및 海外會員은 國內에 住所가 없거나 本籍이 없는 個人 또는 法人으로서 會社가 別途로 定한 바에 따라 會社가 入會를 承認한 者로 한다.

## 第9條 其他會員

1. 年會員 및 家族會員 其他會員은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別途로 定한다.
2. 入會에 必要한 條件 및 節次는 會社가 定한다.
3. 家族會員
  - ① 1次,2次 正會員 募集 時 個人會員에 의해 指名된 直系家族 1人에 限한다.
  - ② 家族會員은 豫約權이 없으며 주중에 限하여 入場料에 대하여 會員 待遇를 받는다. 단, 名義變更에 의해 新規會員이 된 正會員은 家族會員을 둘 수 없다.

# 第3章 會員運營 및 管理

## 第10條 入會

本 클럽의 入會는 所定の 入會節次에 따라 會社의 承認을 得 하여야 하며 會員證을 發給 받음으로써 會員資格을 取得한다.

## 第11條 入會金

1. 入會金은 正會員 및 外國人, 海外會員의 入會保證金으로써 脫會時 元金만 返還한다.
2. 其他會員의 入會金은 別途로 定한다.
3. 外國人會員 및 海外會員의 入會金은 圓貨로 표시한다.
4. 다음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會員이 退會申請時 入會金을 返還한다.
  - ① 會社의 事情에 依하여 6個月 以上 營業을 停止하거나 會員募集이 50%以上 확보된 新設 골프장의 開場日이 2年 以上 遲延 될 時. 단, 天災地變으로 인한 暴雨, 強風, 및 暴雪등 不可抗力의인 事態 發生으로 忍하여 長期間 營業이 中止되거나 開場이 遲延 될 時는 例外로 한다.

- ② 會員이 障碍人 福祉法施行規則에 依한 3급 以上の 障碍를 當하여 競技가 不可 能 할 時.
- ③ 會員이 施設利用에 6個月以上 不當하게 拒絶 當할 時.
- ④ 會社의 目的 事業을 變更하여 골프장을 閉鎖 할 時.

## 第12條 施設利用 및 會費

골프장은 會員이 우선적으로 利用할 수 있고 餘裕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一般 內場客에게 利用의 機會를 賦與한다. 施設을 利用할 때는 會社가 定한 料金を 支拂하여야 한다.

## 第13條 利用의 制限

天災地變, 國家社會의 顯著한 變化, 其他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施設의 一部 또는 全部에 對하여 그 利用을 制限할 수 있다.

## 第14條 資格의 制限

會員이 다음 各 項에 該當하는 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除名, 또는 一定期間 그 資格을 停止 할 수 있다.

1. 클럽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秩序를 紊亂케 하였을 境遇.
2. 會費 其他의 納入義務를 3個月 以上 履行치 않았을 境遇.
3. 本 會則 및 클럽의 諸規則을 違反 하였을 境遇.
4. 住所變更 또는 會社가 必要로 하는 會員 身上變更등의 申告를 1年以上 怠慢 하였을 境遇.

## 第15條 資格의 喪失

會員은 다음의 境遇에 그 資格을 喪失한다.

1. 會員資格의 讓渡
2. 退會
3. 除名
4. 法人會員의 境遇 法人의 解散
5. 會員死亡

## 第16條 會員權의 讓渡

1. 正會員의 資格은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讓渡 할 수 있다.
2. 會員權의 讓渡 法人利用者 名義變更등은 所定の 節次에 따라 實費를 基準으로 한 金額을 徵收 할 수 있다.

## 第17條 退會

1. 正會員 및 外國人會員, 海外會員은 入會後 入會日로부터 5년이 經過하면 會員의 脫會 要請에 따라 脫會 할 수 있다. 이 境遇 讓渡, 讓受에 의하여 새로 會員이 된 者는 最初의 入會日을 基準으로 한다.
2. 退會하고자 할 때에는 退會 申請書와 會員證을 會社에 提出하여 會社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## 第18條 會員의 權利

1. 會員은 會社가 經營하는 골프장 및 附帶施設을 會社가 定한 會員의 資格으로 利用할 수 있다.
2. 正會員은 本 클럽이 會員을 위하여 開催하는 制 競技大會와 行事に 參加 할 수 있다.

## 第19條 會員의 義務

1. 會員은 골프장을 利用하고자 할 때에는 事전에 利用時間을 豫約하여야 한다.
2. 會員은 골프장을 利用할 때에는 會社가 定한 各種料金を 支拂하여야 한다.
3. 會員은 會社에 申告한 身上에 變化가 생겼을 때에는 身上變化 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.
4. 會員은 골프장과 그 附帶施設을 利用하고자 할 때에는 施設을 최대한 保護하여야 하며 會員證을 持參하여야 한다.
5. 會員은 會員 및 會員의 同伴者가 施設物 破損, 附帶施設 損傷時 賠償措置 하여야 한다.

# 第4章 理事會 및 運營委員會

## 第20條 理事會

1. 本 클럽의 理事會라 함은 西서울 觀光株式會社 理事會를 말하며 그 決議 其他事項에 關하여는 會社의 定款에 따른다.
2. 理事會는 運營委員會에서 決議되어 上程되는 事項을 處理한다.

## 第21條 運營委員會

1. 本 클럽은 圓滑한 運營을 기하고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기 爲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.
2. 運營委員會는 補助機構로써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그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은 別途 規定에 依한다.

## 第5章 競技規則

### 第22條 競技規則

本 클럽의 競技規則은 大韓골프協會에서 制定한 競技規則을 適用한다.

### 第23條 로칼룰 및 臨時規則

本 클럽은 必要에 따라 臨時規則과 로칼룰을 定할 수 있으며 異議制定 및 改定은 運營委員會의 諮問을 받아 理事會가 定한다.

### 第 24條 慣習

本 規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에 關하여는 一般的인 慣習에 따른다.

## 附 則

### 第1條

本 會則의 改廢는 理事會의 議決로써 行한다.

### 第2條

本 會則의 解釋에 있어 疑問이 있을 때는 會社 理事會의 解釋에 따른다.

### 第3條

本 會則은 理事會 議決로 1995年 10月 10日 制定.

本 會則은 理事會 議決로 1996年 04月 07日 改定.

本 會則은 理事會 議決로 2015年 07月 07日부로 改定 施行한다.

위 회칙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.

입회자 :

인